

의안번호	2213419
의 퇴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11.26.
추계번호	25D5420

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60명의 인력 규모의 사무처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, 기본경비,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66억 5,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인건비 등	6,263	6,088	6,238	6,392	1,441	26,421
위원회 회의운영	58	58	58	58	0	232
합계	6,321	6,146	6,296	6,450	1,441	26,653

주: 자문기구 및 신고처 설치·운영, 운송비 및 여비는 포함되지 않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 (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의 설치)	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	의무규정
2	안 제7조 (위원회의 업무)	위원회는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,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, 조사결과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, 조사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및 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, 피해자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, 진실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 함	의무규정
3	안 제8조 (위원회의 구성)	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9조 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	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. 다만,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(제37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·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)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봄(제1항)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의 작성·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함(제2항)	의무규정
5	안 제10조(위원회의 활동기간)	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함(제1조)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제2항)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
6	안 제18조 (사무처의 설치)	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 이 경우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1항)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,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함(제2항)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7	안 제19조 (자문기구의 설치)	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(제1항) 자문기구는 전문위원, 자문위원,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함(제3항)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(제4항)	재량규정
8	안 제27조 (신고처 설치 및 공고)	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실규명신청을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,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(제1항)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9	안 제22조 (공무원 등의 파견)	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0	안 제53조 (운송비·여비 등)	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·감정·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·여비·일당·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	의무규정
11	안 제54조 (사무처의 존속기간)	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(제37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·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) 후 3개월간 존속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 (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의 설치)	○	-
2	안 제7조 (위원회의 업무)	○	-
3	안 제8조 (위원회의 구성)	○	-
4	안 제9조 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	○	-
5	안 제10조 (위원회의 활동기간)	○	-
6	안 제18조 (사무처의 설치)	○	-
7	안 제19조 (자문기구의 설치)	×	자문기구의 규모 및 운영 관련 구체적인 계획의 부 재로 추계에서 제외함
8	안 제27조 (신고처 설치 및 공고)	×	베트남 전쟁 신고처 설치 시 업무범위, 설치규모 등 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에서 제외함
9	안 제22조 (공무원 등의 파견)	○	-
10	안 제53조 (운송비·여비 등)	×	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·감정·진술 등 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 람의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
11	안 제54조 (사무처의 존속기간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라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와 사무처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에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학살·폭력·행방불명 사건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,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 - 제정안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상임위원 3명의 인건비와 비상임위원 9명의 회의참석수당을 산정함
 - 제정안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60명 이

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추계에서는 정원을 60명으로 가정함

- 제정안은 위원회에 공무원 등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추계에서는 파견될 공무원의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. 다만, 기본경비 산정 시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파견공무원에게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포함된 것으로 가정함
- 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직급구성 및 인건비 단가는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함
-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설치·운영, 사무처 설치에 따른 인력 증원 규모 등은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 등을 적용하여 추계함
-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관련 비용은 국회의 유희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함
-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정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며,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사무처 존속기간은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및 사무처의 설치

-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·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, 기본경비 등을 추계
 - 추계에서는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위원장 1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, %)	2.0	2.0	2.0	2.0	2.0	2.0

인, 부위원장 1인, 상임위원 1인 등 3명을 상임으로 가정하고, 위원장은 장관급, 부위원장 1인 및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가정

-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60명으로 가정하며, 직급별 구성은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구성비를 참조함

[표 2]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의 직급별 구성

(단위: 명)

구 분	장관급	차관급	고위공무원	4급	5급	6급	7급	합계
인원	1	2	2	5	15	29	9	63

주: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를 참조함

자료: 국방부

- 인건비 단가는 2025년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급별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.4%를 적용

[표 3] 인건비 단가: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장관급	차관급	고위공무원	4급	5급	6급	7급
인건비 단가	161.9	154.2	118.7	83.9	65.2	50.2	39.7

주: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를 참조하되, 봉급, 정근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휴가비, 직급보조비를 합하여 산정함

자료: 국방부

- (인건비) 인건비 단가에 직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하고,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 효율²⁾을 적용하여 산정함

[표 4]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인건비	4,109	4,207	4,308	4,412	994	18,030
기관부담금	539	555	572	590	134	2,391
합계	4,648	4,762	4,881	5,002	1,128	20,421

주: 2031년은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사무처 존속기간 3개월 치의 인건비와 기관부담금을 산정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기본경비)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25년 인건비 기본경비 비율 31.5%를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산정함

2)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은 아래 표와 같음

	2026	2027	2028	2029
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(%)	13.066	13.130	13.194	13.286

[표 5] 기본경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경비	1,294	1,325	1,357	1,390	313	5,679

주: 2031년은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사무처 존속기간 3개월 치의 기본경비를 산정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자산취득비) 자산취득비는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63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5.7월)한 1인당 자산취득비³⁾를 적용하여 산정함

[표 6] 자산취득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자산취득비	320	0	0	0	0	3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인건비 등) 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 및 사무처 직원 60명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,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7] 인건비 등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인건비	4,109	4,207	4,308	4,412	994	18,030
기관부담금	539	555	572	590	134	2,391
기본경비	1,294	1,325	1,357	1,390	313	5,679
자산취득비	320	0	0	0	0	320
합계	6,263	6,088	6,238	6,392	1,441	26,421

주: 2031년은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사무처 존속기간 3개월 치의 인건비 등을 산정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위원회 회의운영

- 제정안에 따라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, 비상임위원회의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
 -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3명의 상임위원을 제

3)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설립 시 1인당 자산취득비는 아래 표와 같음

(단위: 천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정부기관 자산취득비	4,981	5,080	5,182	5,285	5,391

외한 6명의 비상임위원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함

- 추계에서는 비상임위원을 6명으로 가정하며, 회의참석수당은 40만원(참석수당 20만원, 안전검토비 20만원), 회의는 월 2회(연 24회)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8]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회의참석수당

	민간위원 (명)	연간 회의개최 건수(회)	수당 (천원)	연간 추가재정소요 (백만원)
위원회	6	24	400	5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60명의 인력 규모의 사무처를 운영할 경우 인건비, 기본경비, 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66억 5,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9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인건비 등	6,263	6,088	6,238	6,392	1,441	26,421
위원회 회의운영	58	58	58	58	0	232
합계	6,321	6,146	6,296	6,450	1,441	26,65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베트남전쟁 진실위원회 및 사무처 규모를 제정안의 최대 정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, 직원의 직급별 구성 및 인건비 및 기본경비 내역은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례를 참조하여 산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